

## 제12장 투명성

### 제1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란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여 일반적 또는 추상적 행위, 절차, 해석 또는 그 밖의 요건을 말한다. 이는 특정인에 적용되는 판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란 제12.2조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따라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12.2조 목적 및 적용범위

당사국 각국의 규제 환경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경제운영자, 특히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하는 소규모 경제운영자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추구한다.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상의 그들 각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투명성, 협의 및 더 나은 운영을 위한 명확화와 개선된 약정을 이에 규정한다.

### 제12.3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조치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보장한다.

- 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될 것
- 나. 그러한 조치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 그리고
- 다. 법적 안정성, 정당한 기대 및 비례성의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조치의 공포와 발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

## 2. 각 당사국은

- 가. 제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를 사전에 공포하도록 노력한다.
- 나. 이해관계인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그러한 기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그리고
- 다.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 제12.4조

#### 질의처 및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제안되거나 발효 중인 것으로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그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질의는 이 협정상 수립되는 질의처 또는 접촉선을 통하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규정된 응답은 최종적이거나 법적으로 구속적이지 아니하며 오직 정보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관련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4.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임무를 가진 그 이해관계인을 위한 질의처 또는 접촉선을 확인하거나 창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과정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시간을 준수하며, 결과 지향적이고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당사국이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장소 또는 재심 절차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과정은 또한 제14장(분쟁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12.5조

###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들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함에 있어,

가. 절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공이익이 허용하는 한, 그러한 이해관계인에게 최종적인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가 자국의 법에 근거하고, 이에 따르도록 보장한다.

## 제12.6조 재심 및 상소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가.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그리고
  - 나. 증거와 기록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근거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규정된 상소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 제12.7조 규제의 질 및 성과와 모범 행정 행위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규제 개혁 과정과 규제 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규제의 질과 성과를 증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모범 행정 행위의 원칙에 동의하고, 정보와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 제12.8조

## 비차별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국의 이해관계인, 또는 제3국에 부여되는 투명성 기준 중 최선의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투명성 기준을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한다.